

지키지 않으면...

감액 수준

-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
 - 동일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%, 2차 위반 시 20%, 3차 이상 위반 시 40%까지 감액됩니다.
 -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,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%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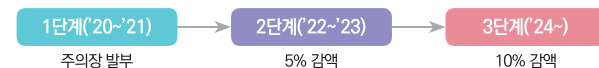
[직불금 감액 예시]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
위반사항	교육이수 위반 (10%)	교육이수 위반 (20%)	교육이수 위반 (40%)
	-	농약사용기준 위반 (10%)	농약사용기준 위반 (20%)
감액(합계)	10% 감액	30% 감액	60% 감액

감액수준 단계적 적용

-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기본직불금의 감액은 2020년부터 적용됩니다.
- 다만,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필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아래 준수사항은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.
 - 1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
 - 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
 - 3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

[농업현장 여건을 고려 단계적 확대]



준수사항 점검 방법!

점검기관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지원, 사무소), 지방자치단체(시, 군, 구)

점검시기

- 품목별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중 실시
 -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9월까지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직불금에 반영합니다.
 - 다만, 시행 첫해인 2020년은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합니다.

조사방법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합니다.
 - 준수사항별로 육안조사, 농산물 및 토양검사, 서류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.

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, 비료 사용기준 준수,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9개

- 다만, 일부 준수사항은 지자체 등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반영하여 직불금을 감액합니다.

비료 적정 보관·관리, 가축분뇨 퇴비·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, 공공수역 농약·가축분뇨 배출금지,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,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·사육·재배 금지,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,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(8개)

문의처

농림축산식품부
공익직불제 콜센터

044-201-1781
1644-8778 (내선 2번)

국민과 함께하는 농업·농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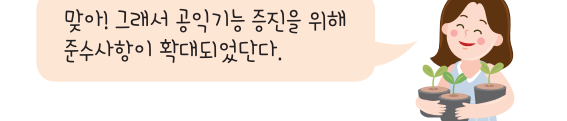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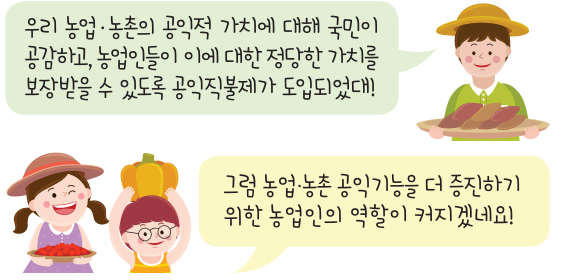
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따라잡기



준수사항의 핵심내용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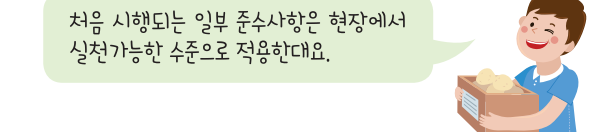
☞ 준수사항이란?

-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실천 활동을 말합니다.



☞ 새롭게 추가된 준수사항은?

개편전(3개)	개편후(+14개)
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,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,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	마을공동체 공동활동,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, 영농기록 작성·보관, 농업·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, 경영체 등록·변경 신고 등



☞ 지키면 무엇이 좋아지나요?



국민과 함께하는
풍요롭고 신뢰받는 농업·농촌

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?

환경 보호

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토양검정 후 발급되는 시비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 (질소, 인산, 칼리)를 정량 사용해야 합니다.

- 토양검정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참고하세요!

2 비료의 적정 보관·관리 (비료관리법 제19조의2)

실천사항

- 농업인은 사용 전까지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.

- 비료구입 시 영수증 보관! 사용할 때는 영농일지에 농지 지번, 사용 일자, 사용량 등 기록하세요!

3 가축분뇨 퇴비·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(가축분뇨법 제10조, 제17조)

실천사항

- 가축분뇨는 가축자원화시설에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또한,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, 살포할 경우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가축분뇨를 사용할 경우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에게 작목별 퇴비·액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을 문의해 주세요!

4 공공수역 농약·가축분뇨 배출금지 (물환경보전법 제15조)

실천사항

- 농약, 가축분뇨는 농업용 수로, 하수, 하천, 강 등에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.

-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,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해 주세요!

5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(하천법 제50조, 제50조의2)

실천사항

-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홍수 통제소에 이용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6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(지하수법 제7조, 제8조)

실천사항

-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·군·구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생태 보전

7-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1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·관리해야 합니다.
-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에 한합니다!
* 유지(옹덩이), 양·배수시설, 수로, 포장된 농로, 농막, 묘지, 창고 등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됩니다!
-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의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도 처벌되지 주의해 주세요!

7-2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,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여 토양관리를 해야 합니다.
- 농지는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.
-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는 주변의 용수로, 배수로를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.

- 휴경 중인 농지는 잡목 등이 무성하지 않게 해주세요!
• 내가 농사짓는 땅이 이웃한 땅과 구분될 수 있게 해주세요!

8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·사육·재배 금지 (생물다양성법 제24조)

실천사항

- 뉴트리아, 황소개구리, 큰입배스 등의 동물류와 돼지풀, 서양 등골나물, 털물참새피 등의 식물류의 반입·사육·재배를 하면 안됩니다.

- 생태 교란 생물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보호해 주세요!

9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(식물방역법 제30조의2)

실천사항

- 분명치 않은 병해충으로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,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'19년 농업인들의 투철한 신고 덕분에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대발생을 방지했어요! 짹! 짹!

공동체 활동

10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마을 주변 영농·생활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이웃과 함께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.
-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활동,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활동, 마을축제 등에 적극 참여합니다.

- 【활동수준 단계적 확대】
• ('20) 8시간 이상 → ('22) 12시간 이상 → ('24)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

11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영농·생활폐기물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업체가 수거·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- 【활동수준 단계적 적용】
• ('20) 폐비닐·폐농약병 지상 방치 금지
• ('22) 폐비닐·폐농약병 매립 및 소각 금지 추가
• ('24) 폐농약, 생활폐기물 지상 방치 금지 추가

먹거리 안전

12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(농약관리법 제23조)

실천사항

-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(PLS) 시행으로 농업인들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또한, 농약병에 표시된 희석배수, 사용횟수, 최종살포일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

- 미등록 농약, 밀수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제한, 폐기 등의 처분을 받아요!
• 특히, '20.5.1일부터는 공익직불금도 감액됩니다!

1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(식품위생법 제7조)

실천사항

- 칸도라지, 간밤의 변색 방지용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을 과다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- 환경에서 유래하는 중금속, 독소류, 방사능물질 등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의 점검대상에서 제외됩니다!

14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(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등)

실천사항

- 농관원, 지자체의 출하제한(출하연기, 폐기, 용도전환 등) 명령을 준수합니다.

5개 분야 17개 의무

경영체 역량 강화

15 농업·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기본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·농촌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, 준수사항 실천기준 등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구분	교육 방법	비고
집합교육	읍·면별 집합 교육	-
찾아가는 교육	마을 단위 방문 교육	고령농 대상
대체승인 교육	농업기술교육 연계 등	농업기술센터, 생산자단체 등

16 농업경영체 등록·변경 신고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시고,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4일 이내 가까운 농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* 변경사항 : 농지의 소유(임차인), 농지의 지번, 면적, 경영형태, 재배품목 등

- 공익직불제도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
• 방문이 힘든신 경우 인터넷 또는 전화로 변경이 가능해요!
• '20년도에는 의무 변경 신고 재배품목이 "벼"만 해당되지만, '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17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(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)

실천사항

- 영농일지에 농자재구입 영수증, 농약·비료 사용기록(일자, 사용량), 기타 영농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.

- 영농일지는 농자재구입 영수증과 함께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【활동수준 단계적 적용】

- ('20) 농자재구입 영수증 보관
- ('22) 농약·비료 사용 내역 작성 및 보관 추가
- ('24) 기타 영농활동 작성 및 보관 추가

